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년 10월 26일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 상정일자 :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년 11월 23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 제안이유

- 시장의 권한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처분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신설(안 별표 2).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서오섭)

○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 ▶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2012.6월 ~ 2017.5월)이 계속 처리해 왔으나, 2017. 3월 대호물류 외 2개 업체에서 달서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구청장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7. 6. 26.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권한의 위임규정이 없는 바, 결국 구청장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법령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한 것으로 무효인 행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
-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업무를 대구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동일업무의 이원화 처리로 인해 행정처분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조례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업무를 2003. 5. 30.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업무도 2011. 3. 10.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업무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 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례 개정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위법성 논란을 불러오고, 결국 행정심판 제기로 인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